

대학 자체평가 규정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6.10.28		16		
2	2017. 3. 1		17		
3	2019. 1. 7		18		
4	2025. 8. 13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대학 자체평가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 제58조의 3에 의거 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하며, 자체평가 실시에 따른 절차, 방법,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
1. “자체평가”라 함은 본교가 자체적으로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(이하 “교육 연구 등”이라 한다)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·분석·평정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평가영역”이라 함은 대학자체평가를 위해 평가 지표를 모은 대단위 구분을 말한다.
3. “평가지표”라 함은 각 영역별 세부 평가 단위를 말한다.

제3조 (관련 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임무) ① 자체평가를 위하여 ‘기획·연구위원회’, ‘평가·검증위원회’, ‘평가 실무위원회’를 둔다.

② 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기획·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, 위원은 공과대학, AI융합대학, 항공·경영대학의 부학장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9.1.7, 2025.8.13>
2. 평가·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임명하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3. 평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평가팀장으로 하고,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별도 평가 실무위원회 없이 예산평가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<개정 2016.10.28., 2019.1.7.>

③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획·연구위원회
 - 가. 기본방향, 전략 수립 및 평가 편람 규정
 - 나. 평가지표 개발 및 지표별 목표값 설정
 - 다. 그 외 수반되는 사항
2. 평가·검증 위원회
 - 가.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지표 관련 기초자료 검증

나.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

다. 그 외 수반되는 사항

3. 평가실무 위원회

가. 평가 지표별 관련 자료 산출 및 전산 입력

나. 평가 지표별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

다. 그 외 수반되는 사항

- ④ 각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<본항 신설 2025.8.13>

제4조 (회의소집 및 의사결정) ① 각 위원회별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- 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 (평가주기) 대학 자체평가는 매 학년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시기는 평가년도 실적 산출되는 매년 11월에서 차년도 3월 사이에 실시한다.<개정 2016.10.28., 2017.3.1., 2025.8.13.>

제6조 (평가기준) 평가방법, 평가영역, 평가지표 등은 대학 자체평가 기획·연구위원회에서 정한 편람에 의한다.<개정 2025.8.13.>

제7조 (평가절차) 대학자체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

1. 자체평가 담당부서(이하 “담당부서”)는 해당학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획·연구위원회에 보고한다.
2. 기획·연구위원회 보고 후, 담당부서는 평가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산 상 자료입력 및 근거 제출을 요청한다.
3. 평가·검증위원회에서는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영역별 담당위원(“자체평가관”이라 칭함)을 지정하여 평가 및 분석을 하고 종합 정리한 후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.
4. 자체평가 최종보고서는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, 학부(과)로 통보하여 학부(과) 발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8조 <삭제 2025.8.13.>

제9조 (평가대상) ① 본 대학 직제상의 단과대학 및 학부(과), 전공 단위는 자체평가의 평가대상이 된다.<개정 2025.8.13.>

② 통·폐합된 단위기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단위기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.

③ 신설되는 단위기관의 경우에는 편제 완성년도부터 평가한다.<개정 2025.8.13.>

제10조 (이의신청) ① 각 기관장은 통보된 실적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.

② 기획처장은 평가·검증위원회에 이를 심의 요청하며, 그 결과를 반영한다.

제11조 (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) ① 자체평가의 결과는 “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”에 의거 2년 1회 이상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.

② 자체평가의 결과는 본교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, 대학특성화 정책 반영, 교육 및 행정체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12조 (기타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기획·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하되, 2018학년도 대학자체평가부터 적용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